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007-제40호
----------	-----------

제출연월일 2007. 6.
5.
제 출 자 이정희의원외4인

1. 의결주문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
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2조)
- 나.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노력(안4조)
- 다.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5조)
- 라.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천시여성주간추진위원회의 구성 (안37조)
- 마.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12조)
- 바.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함
- 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적 조치) 사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은 여성정책인데요

제5조 (수립) ①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 가. 양성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 여성정책
 - 가. 양성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단체, 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타 부처의 여성정책 관련사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 시 여성시책의 원활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당해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위 정책이 양성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수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성인지적 예산편성의 시행과 성별영향평가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참여) ①시장은 예산의 편성,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시장은 시행계획의 착수단계 및 중간결과 보고단계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건의된 사항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여성정책수요 욕구조사결과 및 공청회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한다.

제8조 (시정참여 확대) ①시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정비율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인사, 재정, 도시계획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정부의 목표비율에 달할 때까지 여성위원 위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참여위원의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②시장은 매년 시, 소속기관의 각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단, 신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시의 각 부서,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9조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무원 채용 공고시 제1항에 의한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고용평등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직급별로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④시장은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제도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시정의 주요보직에 여성을 적극 배치하여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실적의 평가) ①시장은 소속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의식 제고) ①시장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차별 개선 등) ①시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 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예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시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제활동 지원) ①시장은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복지증진) ①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가해자 교육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성매매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 농어촌여성, 여성결혼이민자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직업훈련 및 자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있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동
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3. 여성의 국제교류
4. 기타 여성권익증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의견수렴창구의 운영) ①시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은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제안자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19조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해 사천시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지방의회의원제외)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2. 시의원

3. 여성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추천을 받은 자

4.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5. 기타 시장이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시장은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자를 공고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부단체장 1인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시민이 100인 이상의 시민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의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2. 여성정책관련 예산 편성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정책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관련 통계,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7. 여성정책에 관한 시민제안
8. 기타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정책관련 안건
9. 여성관련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 검토, 제안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실비보상)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 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2조 (기금운용심의) ①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제33조 (시민제안) 시민 또는 단체 등이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여성주간

제37조 (기념행사) ① 시장은 매년 여성주년을 설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행사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2. 법 제7조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③시장은 여성주간행사의 민·관공동 추진을 위한 사천시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사천시여성주간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여성단체 및 시민으로 한다.

제6장 여성관련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

제38조 (성별분리통계 구축)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조사사업을 수행한다.

제39조 (여성관련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 ①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여성관련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하는 정보에는 시 소속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2. 여성정책 관련예산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상의 여성정책
4.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정산, 지원 대상사업의 사후평가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7.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업무계획 및 평가

8. 여성관련시설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서
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제9조 제1항, 제3항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및 소속직원의 직급별 성별 통계
12. 여성의 보직 실태
13. 성별분리통계
14. 기타 여성관련 통계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적절하게 갱신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제40조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 보장) ①시장은 여성장애인, 문자해독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사천시 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